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2일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 후 가스 유통업체에 대한 제한을 유예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어제 밤에 유통업체와 운송업체가 가솔린, 디젤 및 등유를 평상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뉴욕주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허리케인 샌디의 결과인 현재의 가스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운송업체와 유통업체는 주 세무재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본 행정 명령은 그러한 등록 요건을 일시 유예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 명령은 유통업체와 운송업체가 현재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우리 주 안으로 가스를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뉴요커들은 직장, 가족 및 가정에 가능한 한 속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리더인 Dean G. Skelo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폭풍의 결과로 우리의 연료 공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연료 구입자들은 Long Island의 고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주외 유통업체들로부터 연료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면허와 세무 요건은 주외 연료를 구입하기 위한 그들의 능력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일시 면제하면 번잡한 행정이 제거되어 Long Island 주민들이 출근하고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 명령의 원문입니다:

<u>행정 명령</u>

주 재난 비상을 위한 자동차 연료 유통 및 운송 관련 조항의 일시 정지

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47호를 2012년 10월 26일에 발령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법 2-B조의 29-a항에 의해 그 조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명령이 발행된 날짜로부터의 기간 동안 다음의 법률들을 일시 정지합니다:

세법의 제282, 283, 302조, 동 조항이 자동차 연료 또는 디젤 자동차 연료를 반입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연료 유통업체 또는 디젤 자동차 연료 유통업체로서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한도;

세법의 제283-a조, 동 조항이 사람에게 반입 또는 반출 운송업체로서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한도;

세법의 제285 및 285-a조, 동 조항의 요건이 본 행정 명령의 이유에 의해 자동차 연료 유통업체로 등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입수되는 자동차 연료에 적용되는 한도;

세법의 제285-b조, 동 조항의 요건이 본 행정 명령의 이유에 의해 디젤 자동차 연료 유통업체로 등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입수되는 디젤 자동차 연료에 적용되는 한도;

세법의 제286, 286-a, 286-b조, 동 조항의 요건이 본 행정 명령의 이유에 의해 자동차 연료 유통업체, 디젤 자동차 연료 유통업체 또는 반입 또는 반출 운송업체로서 등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사람에 의해 뉴욕주 안으로 또는 바깥으로 운송되는 자동차 연료 또는 디젤 자동차 연료에 적용되는 한도; 및

세법의 제1134조, 본 행정 명령의 이유에 의해 자동차 연료 유통업체 또는 디젤 자동차 연료 유통업체로서 등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사람이 권한 증서를 득할 것이 요구되는 한도.

2012년 11월 1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